##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20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정호·신영대·전진숙

박 정 • 윤후덕 • 김동아

이연희 • 허종식 • 정성호

박희승 · 이훈기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 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 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 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 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 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 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 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조).
- 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 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안 제18조제5항).
- 라.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 마.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 24조제1항).
- 바.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의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9조의7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821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제782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 및 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이하 "전기가스열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정관리"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전기가스열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전기가스열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전기가스열위원회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 다.

제8조의3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정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정관은 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0조의8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0조의9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11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1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13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1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로 한다.

제10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정관원부정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정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천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 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전기가스열 위원회에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

제17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 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다.

하다.

제2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제30조의4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로 한다.

제30조의6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0조의7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조의4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의5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39조의6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9조의7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조의8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전기가스열위원회와"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한다.

제40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각 "총리

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 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 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 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에너지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른 사무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행위 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한국 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	3
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	
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	
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	
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u>산업</u>	총리령
<u>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대	<u>으로</u>
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	
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4의2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	
로 제조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	<u>총리령으로</u>
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3.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	4의3

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제외한다)을 말한다.

4의4. (생략)

-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 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 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 조시설을 말한다.
-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 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 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 10. (생 략)

총
으 리령으로
<u> </u>
 사이사 (관리기 기 이)
4의4. (현행과 같음)
5
<u>총리령으로</u>
6
총리령으로
<del></del> 
7.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 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 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조(사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전기가
스열위원회(이하 "전기가스열
위원회"라 한다)
 리령으로
· ②
, 
<u>총리렁으로</u> -
③
,
총리령으로

- <u>으로</u>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 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 ⑨ (생 략)
- ①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 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 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

,
4
- <u>총리령으로</u>
⑤
전기
가스열위원회의
<u>총리</u>
<u> </u>
⑥ ~ ⑨ (현행과 같음)
<b>1</b>
총리령으로
①

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 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

	<b>.</b>
<u>전기</u> 가스열위원	회와
<u> </u>	·
⑩ 전기가스열위원회	<u> </u>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
	·
	· ·총리령 <u>으</u>
<u>로</u>	<u>총리령으</u> <u>전기가스</u>
	<u>총리령으</u> <u>전기가스</u>
<u>로</u>	<u>총리령으</u> <u>전기가스</u>
<u>로</u>	<u>총리령으</u> <u>전기가스</u>
<u>로</u>	<u>총리령으</u> <u>전기가스</u>
<u>로</u> 열위원회  1.・2. (현행과 같음)	
<u>로</u> 열위원회  1.・2. (현행과 같음)	
<u>로</u> 열위원회  1.・2. (현행과 같음)	

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 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u>총리령으로</u>
<u>전기가스열위원회</u> -
1. ~ 4. (현행과 같음)
③
<u>총리령으로</u>
전기가스열위원회
④ 전기가스열위원회

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⑥ (생 략)
-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바이 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 한) ① 나프타부생가스・바이 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 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 1. ~ 4. (생략)
  - 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

,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전기가스열
<u>위원회</u>
<u>.</u>
② 전기가스열위원회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바이
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
한) ①
<u>.</u>
1. ~ 4. (현행과 같음)
5총리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 ②·③ (생 략)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도 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 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 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 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 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 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 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 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u> 령으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u>전기가</u>
스열위원회
•

- 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6.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u>산업통상자원</u> 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 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 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 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 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 1. ~ 16. (현행과 같음) ②
<u>총리령으로</u>
· 제10조(과징금) ① <u>전기가스열위</u> <u>원회</u>
 1.·2. (현행과 같음) ②
<u>리령으로</u> ③ <u>전기가스열위원회</u>

제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정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생략)
-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총리령으로
 전기가스열위
<u>원회에</u>
·
② (현행과 같음)
③
<u>총리령으로</u>
전기가스열위원회에
·
  ④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④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④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수리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① 제10 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 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 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 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 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 여야 하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①
전기가스열위원회에
②
전기가스열위원회
는 총리령으로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④ (현행과 같음)
⑤
총리령으로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 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총리령
<u> 으로전기가</u>
스열위원회에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u> </u>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
인 등) ①
<u>총리령으</u>
<u>로</u>
-전기가스열위원회의
· 
②

수입계약 · 수출계약 또는 수송 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 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 수출계약 또는 수송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 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 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 약 · 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 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 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

총리령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에
③
<u>총리렁으</u>
<u>로전기가스</u>
<u>열위원회에</u>
4
<u>총</u>
<u>총</u> 리령으로 <u>전</u>

다.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 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 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산 저

5
<u>총리령으로</u>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⑥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⑦ 전기가스열위원회가
∥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u>전</u>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 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 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 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 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 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 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 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 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 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 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기가스열위원회는
1. ~ 4.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③
<u>총리령으로</u>
제10조의8(과징금) ① <u>전기가스열</u>
위원회는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 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 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 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생략)

,
②
<u>총리령으로</u>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u>총리령</u>
으로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 연가스 대상물량) ① (생 략) 연가스 대상물량) ① (현행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생 략)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 지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 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
의 등록 등) ①
<u>총리령으로</u>
전기가스열위원회에

#### ② ~ ⑤ (생 략)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 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u>산</u> 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u>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 출입 신고·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 약·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 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u>총리</u>
<u> 령으로</u> <u>전기</u>
<u> 가스열위원회에</u>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
출입 신고·변경신고) ①
<u>총리령</u>
<u>으로전기가</u>
스열위원회에
②
<u>총리령으로</u>
전기가스열위원회에

-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 자의 처분제한) ① (생 략) 자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 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 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 ·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
- 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하다.
  - 1. ~ 6.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 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 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 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u>o</u> )
② <u>전기가</u>
스열위원회가
<u>.</u>
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1. ~ 6.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을	정하여	ユ	사업	의	전	[부	또
는	일부의	정기	지를	명형	할	수	있
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u>산업통상자원부령</u> 으로 정한다.
-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
  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 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 려면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③
<u>총리령으로</u>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u>총리령으</u>
<u>로</u>
<u>총리령으</u>
<u>로</u>
전기가스열위원회
<u>총리령으로</u>
②
<u>총리렁으로</u>
<u>총리령</u>
<u>으로</u>
<u>전기가스열위원회</u>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 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1. · 2. (생략)
-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 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 는 자
- ⑥·⑦ (생 략)

<u>총</u>
리렁으로
③ 전기가스열위원회
<u>.</u>
④ (현행과 같음)
5
총리령으로
1. • 2. (현행과 같음)
3
<u>총리렁으로</u>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 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 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7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 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8	<u>전기</u>	] <b>/</b> }-	스열.	위원	<u>회</u>	
			_				
			•				
제				상공	급시	설의	설치
제			(비)			설의 	
제	113	<u></u> 의2	(비)				
제	113	<u></u> 의2	(비)				
제	113	<u></u> 의2	(비)				
제	113	<u></u> 의2	(비)				
제	113	<u></u> 의2	(비)				
제	113	<u></u> 의2	(비)				
제	11조 등) 	을 의 2 ① 	(日) / 				
제	11조 등) 	도의2 ① 	(日) / 			등리 정	
제	11조 등) 	을 의 2 ① 	(日) / 			  등리령 선기가	    으로
세	11조 등) 	을 의 2 ① 	(日) / 			  등리령 선기가	    으로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 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 -----총리령으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 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 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관 -----총리령으로-----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 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 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 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 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 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다.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 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 리령으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	①
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u>산업통상</u>	총리렁으
<u>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	<u>로</u>
라 그 시공기록 • 완공도면(전	
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	
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	
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	
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2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	
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	
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u>산업</u>	총리령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가스	<u>으로</u>
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	
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	
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하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③ -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

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 -----총리렁으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 -----<u>전기가스열위원회</u>-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u>총리령으로</u>-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 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u>전기가</u>스열위원회-----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 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 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렁으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 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 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 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가 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 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 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 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 ·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⑥ (생략)
- ①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전기가스열위원회
4
<u>총리렁으로</u>
<u>.</u>
⑤
<u>총리령으로</u>
⑥ (현행과 같음)
⑦
총리령으로

<u>로</u> 정한다.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
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
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
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
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
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 ② (생 략)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

<u>.</u>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전기가스열위원회
<u>총리령으로</u>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u>총리령으로</u>
전기
가스열위원회

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 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u>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 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②
	<u>충</u>
	<u>리령으로</u> .
제	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성평가의 실시 등) ①
	<u>총리령으로</u>
	②
	1
	총리궝ㅇ로

로 정하는 시기마다. 다만, 제 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경우 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 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 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 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 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 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

총리렁으로
<u>848-x</u>
2
2
<u>총리령으로</u>
③
<u>총리</u>
<u> 령으로</u>
<u>전기가</u>
<u>스열위원회에</u>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의2	제1호	항에	प्पः	른 .	도시	가건	:사	.업
자	외의	가	스공	7급	시설	실설치	가	에
게	<u>산업</u>	통성	가	원부	-렁.	으로	정	하
는	바이	) H	라	가:	스공	'급시	]설	에
대즉	한 보	수 •	보る	) )	등 3	필요	한	조
치딑	를 명	할 4	수 9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 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 한다.
-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 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

총리령으로
⑤
<u>총리령으로</u>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총리령으로</u>
4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총리령으로----<u>으로</u> 정한다.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 관리) ① 총리령으로-----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 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u> 령으로</u>-----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 --전기가스열위원회에----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 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 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 (4) -----

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 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 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 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 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①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상세기준) ① (생 략) 🗷

<u>총리령으</u> 로전기가스 열위원회에
⑤
전기가스열위원
회에 총리렁으로
⑥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⑦
<u>총리령으로</u>
세17조의5(상세기준) ① (현행과

-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u> <u>부장관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 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 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
<u>)</u>
③
기기기 사이이 키
<u>전기가스열위원회</u>
<u>는</u>
④ (현행과 같음)
⑤
<u>총리령으</u>
<u>로</u>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총리령으로-

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
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
<u>자원부렁으로</u>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
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
2월 말일까지 <u>산업통상자원부</u>
<u>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 ③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 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 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 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u>총리령으로</u>
전기가스열위원회에
<u>.</u>
_
3
<u>총리령으로</u>
<u>.</u>
·
(4)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 계획이 사회적 ·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 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 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 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 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 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 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포함되어야 한다.

	<b>-</b> .
	⑤ 전기가스열위원회
제	· 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
	<u>총리령으로</u>
	<u>전기가</u>
	<u>스열위원회에</u>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총리령
	으로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 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 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 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 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 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 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야 한다.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 저 획) ① (생 략)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총리령 <u>으로</u>
,
④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⑤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 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	2
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	
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	<u>총리령으로</u>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	의무) ①
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	
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u>총리령으로</u>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	
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	
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	,
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	
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	
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	②
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 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 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 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 ③ (생략)

-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의 분담) ① ~ ③ (생 략)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 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 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 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의 분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총리령으로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호키러 시크
<u>총리령으로</u>
<u>.</u>
② (현행과 같음)

-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 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 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 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 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 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 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 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생 략)
-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 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 인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④ (생 략)
-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E	3)
-	
_	<u>총리령으로</u>
-	
-	
(4	
_	
-	
-	- <u>총리렁으로</u>
제2	0조(공급규정) ①
-	
_	
-	
-	<u>전기가스열위원회</u>
<u>0</u>	<u>1</u>
_	
_	
(2	② (현행과 같음)
C	③ 전기가스열위원회
_	
_	
_	
1	. ~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F	5)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산업통</u> <u>상자원부령으로</u> 정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 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 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 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 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 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⑧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시· 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

종리령으
<u></u> 로
⑥ 전기가스열위원회는
<u>.</u>
⑦ 전기가스열위원회
① <u>전기가스열위원회</u>
⑦ <u>전기가스열위원회</u>
① 전기가스열위원회
⑦ 전기가스열위원회
① 전기가스열위원회
① 전기가스열위원회
① 전기가스열위원회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
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u>산업</u>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 성 확보) ①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 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시적

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리
ਰ으로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
성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	
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	
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	
다.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①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도시가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열량・	
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	
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	
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소의2(노시가스의 품실검사)	제25소의2(노시가스의 품실검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② 전기가스열위원회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	
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	
·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	
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	
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	③
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u>총리령으로</u>
<u>으로</u> 정한다.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 <u>산업통상자원부</u>	전기가스열위원회
<u>장관</u>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산업통/	상자원부?	<u>장관</u> , 시	· 도
기	사 또는	시장・교	구수 • 구기	청장
은	안전을	확보하기	] 위하여	필
요	하다고 역	인정하면	제1항에	叫
른	안전관i	리규정을	변경하드	근록
명현	할 수 있	다.		

- ④ (생 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7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 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

③ 전기가스열위원회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가스열위원회
총리령으로
6
<u>총리령으로</u>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

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 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 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 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 나 도시가스의 공급증지・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 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② 전기가스열위원회
(2) <u>선기가스열위원회</u>

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 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 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 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 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u>로</u>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가스열위원회	
~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 변경에
M140エイ4(/「一个で17世	건성계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따른 안전조치)		
	<u>총리령</u>	<u>으로</u>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u></u> 孝i	<u> 믜렁으로</u> -	
,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관리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②
<u>총리령으로</u>
제29조(안전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총리렁으</u>
로
<u>전기가스열위원회</u>
전기가스열
위원회

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⑧ (생 략)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 전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가스열위원회
· ⑥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제30조(안전교육) ①
<u>전</u>
기가스열위원회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 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 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 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 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 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 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 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u>총리령으로</u>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 황 확인) ①
<u>총리령으로</u>
,
② <u>총리령으로</u>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 여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가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1. 2. (생략)
- 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 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생략)

③
<u>총리령으로</u> -
<b>4</b>
총리렁으로-
0 1 0
<u> </u>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	⑤
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부령</u>	<u>총리렁으로</u>
<u>으로</u> 정한다.	
제30조의5(협의・순회점검) ① 도	제30조의5(협의·순회점검) ①
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	
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u>산업</u>	<u>총리</u>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굴착	<u> 령으로</u>
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u>산업</u>	<u>총리령으로</u>
<u>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②
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의를 하 경우에는 사언	李刊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u>령으로</u>-----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

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 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 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 의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 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 지 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 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 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 조 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 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 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를 하도록 노력한다.

<u>.</u>
③
- <u>총리령으로</u>
<u>총리령으로</u>
<b></b>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
지기준의 준수)
<u>총리령으로</u>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
조치 등) ①
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
<u>총리령으</u> 크
<u> </u>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 리령으로-----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하다.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등) ①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 사업자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선박용천 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 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총리령으로-----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 --총리령으로-----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 기술 기준, 인력기 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략)
-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u>총리렁으로</u>
<u>.</u>
1
전기가스열위원회
2. (현행과 같음)
②
총리령으로
<u>총리령으로</u>
<u></u> 총리령으
<u> </u>
<u></u>
전기가스열위원회
<u>총리령으로</u>
③ 전기가스열위원회

하다.

- ④ (생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 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 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
-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 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가스열위원회
<u>총리령으로</u>
<u>.</u>
⑥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총리령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 🗷 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 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 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 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 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4호의 4·제5호·제6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 항 · 제5항, 제43조의3 및 제44 조의2제1항·제2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과 "<u>산업통상자원부</u>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 7

39조의5(준용 	· 규정) 
	·전기가
스열위원회-	
	<u>전기가</u> 
	- <u>전기가스열위원회</u> -
	 ^공급시설의 공동

이용) ①・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한다.
- ④ (생략)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 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 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총리령으로</u>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총리령으로
<u> </u>
<u> 기가스열위원회의</u>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 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 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 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 이용요령을 정하여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u>총리령으로</u>
, @
③ <u>총리</u> <u>령으로</u>
<u> </u>
4
<u>총리령으로</u>
<u></u>

을 정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u>산업통상</u> 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 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 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u>기가스열위원회에</u>
 ⑤ <u>전기가스열위원회</u>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u>전기가스</u> <u>열위원회는</u>

③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 략)

제40조의2(회계 처리) ① 도시가 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0조의3(지도·감독)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 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 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

③	
<u>전</u>	
기가스열위원회와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회계 처리) ①	
<u>전기가스열위원회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지도·감독) <u>전기가스</u>	
<u>열위원회는</u>	

도 · 감독한다.

제41조(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 기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 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 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 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 등) ① <u>전기가스열위</u>
원회는
<u>.</u>
②
총리령으로
③
총리렁으로
<u>04.0-T</u>
-1-1-1 > A A A A A
<u>전기가스열위원회</u>

- 1. ~ 4. (생략)
-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 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 ④ (생략)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 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 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 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 자
- 3.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 는 시공자
- ②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 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1. ~ 4. (현행과 같음) -
5
총리령으로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보험 가입) ①
 1. (현행과 같음)
2. <u>총리령으로</u>
3. <u>총리령으로</u>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 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 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 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생 략)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
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
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
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전기가스열위원회
<u> </u>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u>전기가스열위원회</u>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제4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u>산업</u>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 1. ~ 7. (생략)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 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 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 업자가 부담한다.

· 제43조의4(청문) <u>전기가스열위원</u> <u>회</u>
· 1. ~ 4. (현행과 같음) 제44조(수수료 등) ①
<u>총리</u> 령으로
2
전기가스열위원 <u>회가</u>
 1. ~ 7. (현행과 같음) ③
د اداد
<u>전기가스</u> 열위원회가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	①
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	
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	
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	
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	
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u>전기가스열위원회</u>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② 전기가스열위원회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u>.</u>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에 따른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u>전기가스열위원회</u> -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u>.</u>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② <u>전기가스열위</u>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원회

- ・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위탁할 수 있다.
- 1. ~ 6. (생략)
- ③ (생략)
-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전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세	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 전기가스열위원회
-	
-	
-	
-	
-	
-	
-	
	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1
	1. ~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	제3항(제39	9조의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표	E함한다)을
위	반하여	완공도면	의 사본을
<u>산</u>	업통상/	<u> </u>	<u> 또</u> 는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제출하
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
느	도시가	·스사업자	외의 가스
공	·급시설4	설치자	

7. ~ 9. (생 략)

- ③ ~ ⑥ (생 략)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정수한다.

6
-전기가스열위원회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기가스
열위원회
열위원회